

Legislative & Policy Weekly

# 세종Law *Focus*

주간 입법·정책 동향

**Vol.321** | 2026.3.3 (2026.2.23~2026.3.2)

**I. 정부 주요 정책 동향**

**II. 입법(안) 동향**

1. 공포 법안
2. 입법(행정)예고 법안
3. 법률 발의 및 제출안

**III. 국회 주간 의사일정(안)**

**IV. 국회 주요 행사(토론회, 세미나, 자료집)**

**V. 법무법인(유) 세종 주요 뉴스레터**

**Contact:** 백대용 변호사(파트너)

02-316-4630, 010-3248-5382  
dybaek@shinkim.com

# Summary

## 【정부의 주요 정책】

<국토교통부>는 AI 기술을 활용해 국민의 이동을 더 빠르고 편리하게 바꾸기 위해 향후 5년 간 모빌리티 정책의 이정표를 제시하는 「**2030 모빌리티 혁신성장 로드맵**」을 수립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로드맵은 지난 '22년 9월 발표되었던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 이후 두 번째로 발표되는 모빌리티 분야의 청사진입니다.

<산업통상부>는 「**2026년 범부처 수출확대방안**」과 「**‘모두의 수출’을 위한 무역금융 혁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고조되는 통상환경 불확실성을 넘어 올해 수출 목표 7,400억 달러 달성을 위해 ① 품목·시장 다변화, ② 지원체계 혁신, ③ 기업 성장 사다리 구축 등 3대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 【입법(행정)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합성생물학 연구개발의 기반을 조성하고 안정성을 확보하며 합성생물학을 이용한 과학기술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합성생물학 육성법」이 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합성생물학 육성법 시행령 제정안**」,

<금융위원회>는 분식회계 신고유인 제고를 위해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상한을 폐지하고, 실제 징수된 과징금 기준으로 포상금을 산정·지급하는 등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 【법률 발의 및 제출안】

규제특례제도의 통합 관리 근거·방안을 마련하고, 국무조정실이 규제특례의 전 주기를 책임·관리하며, 개별 부처에서 다루기 어려운 핵심 규제과제를 신속하게 기획·조정하는 총괄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신산업·신기술 규제특례 등에 관한 법률안(박상혁의원 등 12인)**」,

통신판매중개업자는 통신판매의뢰자와 소비자 간의 통신판매중개에 관한 내용 및 소비자의 사후후기정보를 보존하도록 하는 한편, 일정 매출액 규모 이상의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는 사후후기정보의 정정·삭제 등의 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준석의원 등 10인)**」,

동의의결 불이행 기간에 대해 1일당 사업자 일 평균매출액의 5%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매출액이 없는 경우 등에는 1일당 2,000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의원 등 11인)**」 ,

선 행정제재, 후 형벌 부과로 전환하고, 과징금 부과수준을 합리화하는 등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남근의원 등 16인)**」 ,

대규모 소비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소비자 기만 행위, 소비자의 청약 철회를 방해하는 행위, 눈속임 상술(다크패턴), 개인정보 유출 등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 없이 곧바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남근의원 등 17인)**」 ,

민간투자사업에 있어서도 재정사업과 마찬가지로 물가변동 등을 합리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의원 등 20인)**」 ,

방위사업계약에 따른 낙찰자 결정 시 지속가능경영 활동 성과를 고려하여 가산점 부여 등의 우대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존의 기술 중심 인센티브 조항을 포괄적인 계약 인센티브 조항으로 개편하는 등의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백선희의원 등 13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보통신망의 안정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정보통신망연결기기 등에 대한 보안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장겸의원 등 10인)**」 ,

지식재산처장의 온라인 모니터링 실시 및 정보시스템 구축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일정 규모 이상인 온라인상품판매매개자가 상표권 침해 예방을 위하여 모니터링을 하도록 하되, 미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의원 등 12인)**」 ,

유해성분 농도가 낮은 대마를 ‘헴프’로 명확히 정의하고, 헴프의 재배·가공·유통·판매 등 전 과정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의료·식품, 산업용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합리적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헴프산업 육성 및 헴프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윤준병의원 등 11인)**」 ,

항행안전시설과 그 기반시설 또는 부속시설로서 재해 발생 시 생명·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시설을 중대시민재해와 관련한 요건으로 명시하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은혜의원 등 21인)**」 등이 발의되었습니다.

#### 【주요 국회의사일정(안)】

<과방위>에서 법안 심사가 예정되어 있고, <국방위>, <문체위> 등에서 업무보고 등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 목 차

## I. 정부 주요 정책 동향

[바로가기](#)

- 「2030 모빌리티 혁신성장 로드맵」 발표(국토교통부) ..... 7
- 「범부처 수출확대방안」, 「무역금융 혁신방안」 발표(산업통상부) ..... 8

## II. 입법(안) 동향

### 1. 공포 법안

[바로가기](#)

-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재정경제부) ..... 9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재정경제부) ..... 9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재정경제부) ..... 9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기후에너지환경부) ..... 10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국토교통부) ..... 10
- 공항시설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국토교통부) ..... 11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국토교통부) ..... 11

### 2. 입법(행정)예고 법안

[바로가기](#)

- 합성생물학 육성법 시행령 제정안(과학기술정보통신부) ..... 12
-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보건복지부) ..... 12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금융위원회) ..... 13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금융위원회) ..... 13

### 3. 법률 발의 및 제출안

[바로가기](#)

- 신산업·신기술 규제특례 등에 관한 법률안(박상혁의원 등 12인) ..... 14
- 회계기본법안(최은석의원 등 11인) ..... 14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준석의원 등 10인) ..... 15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의원 등 12인) ..... 15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진욱의원 등 16인) ..... 15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의원 등 11인) ..... 16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의원 등 11인) ..... 16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의원 등 11인) ..... 17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남근의원 등 16인) ..... 17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남근의원 등 17인) ..... 18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의원 등 11인) ..... 18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의원 등 11인) ..... 19

|                                                            |    |
|------------------------------------------------------------|----|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혁진의원 등 10인) .....            | 19 |
|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의원 등 20인) .....              | 20 |
|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의원 등 10인) ..... | 20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의원·구자근의원 등 23인) .....                 | 21 |
|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의원 등 10인) .....                          | 21 |
| •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백선희의원 등 13인) .....                         | 21 |
| •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선희의원 등 13인) .....           | 22 |
| •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선영의원 등 10인) .....             | 22 |
|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의원 등 17인) .....                      | 23 |
|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장겸의원 등 10인) .....    | 23 |
|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의원 등 12인) .....          | 24 |
|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의원 등 10인) .....                 | 24 |
| •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의원 등 12인) .....                           | 24 |
|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의원 등 13인) .....                | 25 |
| •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권향엽의원 등 11인) .....  | 25 |
| •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의원 등 11인) .....                      | 26 |
| •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의원 등 11인) .....                     | 26 |
| • 북극항로 활용 촉진 및 연관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임미애의원 등 10인) .....         | 27 |
| • 헴프산업 육성 및 헴프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윤준병의원 등 11인) .....            | 27 |
|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백종헌의원·서미화의원 등 17인) .....                     | 28 |
|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등 13인) .....                    | 28 |
|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은혜의원 등 21인) .....              | 29 |
|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의원 등 13인) .....                       | 29 |
| •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의원 등 10인) .....                       | 30 |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의원 등 10인) .....                  | 30 |
| •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손명수의원·김은혜의원 등 24인) .....                | 31 |
| •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안태준의원 등 10인) .....                  | 31 |

### III. 국회 주간 의사일정(안)

[바로가기](#)

#### 1. 위원회 일정

### IV. 국회 주요 행사(토론회, 세미나, 자료집)

[바로가기](#)

[별첨] 지난 호 세종Law Focus(제320호) 중 국회 주요 행사 관련 자료 첨부

## V. 법무법인(유) 세종 주요 뉴스레터

[바로가기](#)

- [바이오/헬스케어] GMO 완전표시제 도입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 [해외 규제]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대한 대응방안 및 향후 전망
- [지적재산권] 중국인이 지배하는 미국 기업의 미국 반도체 사업 인수 무효화 및 시사점
- [에너지·자원] 해외 투자개발사업 Issue Brief - 해외건설 정책 동향
- [건설/부동산] 건축물분양법에 따른 시정명령을 취소하는 대법원 확정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 [노동] 개정 ‘노란봉투법’ 시행령 및 고용노동부 해석지침이 확정되었습니다.
- [기업지배구조] 3차 개정상법 본회의의 통과 - 확정된 자사주 의무소각 제도와 실무 대응 전략
- [지적재산권] 2025년 주요 판례 및 2026년 주요 개정 법령 정리 - (1) 특허
- [지적재산권] 2025년 주요 판례 및 2026년 주요 개정 법령 정리 - (2) 상표, 디자인, 부정경쟁방지법
- [형사] 공시 내용대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기적 부정거래로 기소된 사건에서 전부 무죄를 이끌어낸 사례
- [ESG] 금융위원회, 지속가능성 공시제도 로드맵 발표
- [금융] 월간 기업 금융분쟁 뉴스레터
- [지적재산권] 인공지능 기본법과 콘텐츠 산업 - ‘투명성 확보 의무’를 중심으로
- [소송] 법령상 권한의 위임이 아닌 내부 위임에 해당함을 이유로 수임관청이 자기 이름으로 한 보조금 지급 제한처분 및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한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 [지적재산권] 2025년 주요 판례 및 2026년 주요 개정 법령 정리 - (3) 저작권
- [지적재산권] 2025년 주요 판례 및 2026년 주요 개정 법령 정리 - (4) 영업비밀
- [에너지·자원] 재생에너지법(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 국회 통과
- [중대재해] 대표이사가 아닌 계열사 총괄회장은 특수한 경우가 아닌 이상,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 I. 정부 주요 정책 동향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2030 모빌리티 혁신성장 로드맵」 발표**  
- 2027년 완전자율주행(레벨4) 상용화, 2028년 UAM 상용화

2026-02-26

국토교통부는 AI 기술을 활용해 국민의 이동을 더 빠르고 편리하게 바꾸기 위해 향후 5년 간 모빌리티 정책의 이정표를 제시하는 「2030 모빌리티 혁신성장 로드맵」을 수립했다고 밝힘. 이번 로드맵은 지난 '22년 9월 발표되었던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 이후 두 번째로 발표되는 모빌리티 분야의 청사진임

이번 로드맵은 AI를 기반으로 5대 모빌리티 분야를 혁신하는 전략을 담았으며, 주요 추진과제는 다음과 같음

### ① 자율주행 강국도약

'27년 AI기반 레벨4 완전자율주행 상용화를 위해 도시 단위 자율주행 실증을 본격 추진. '26년 광주광역시에 자율차 200대 투입을 시작으로 대규모 실증에 나설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실주행 데이터를 표준화해 통합·공유하는 자율주행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26~)하여 '실증 → 데이터 수집 → 학습'에 이르는 AI 기반 자율주행 기술개발 체계 구축을 본격화할 계획

### ② 도심항공 모빌리티UAM·드론

'28년 공공 서비스 중심의 UAM 상용화부터 시작하여 '30년 민간 주도 서비스 도입을 본격 지원. 이를 위해 기체인증, 사이버보안 등 안전체계를 정비하고(~'27), 버티포트, 통신망 등 공공 인프라 기반(~'28)도 구축. UAM 핵심기술 개발을 위해 기초·성장기·미래형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실증 → 초기상용화 → 본격 상용화'로 이어지는 단계적 상용화를 추진

### ③ 탄소중립 모빌리티

신차 중 친환경차 비율을 '30년까지 40%, '35년까지 70% 달성하는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2035」를 지원. 전기차 배터리 인증제 본격 시행('26), 구형 배터리관리시스템(BMS) 개선장치 개발('26) 등을 통해 배터리의 안전성을 높임. 배터리 서비스 산업 육성을 위해 배터리 리스·교환 실증 사업과 제도화('26)를 추진하고, 사용후 배터리 순환이용 및 안전관리를 위한 성능평가·안전검사제도 시행('27)

### ④ 일상 모빌리티

자율주행 기술도입 준비('26), 공공플랫폼 구축('27) 등 수요응답형 교통체계(DRT)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법제정을 통한 개인형 이동장치(PM) 관리 강화('26), 원격운전 도입을 위한 제도개선('27), 통합교통서비스(MaaS) 앱 고도화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 속 모빌리티 서비스를 구현

### ⑤ 모빌리티 기반 도시·공간

3D 공간정보, 실내공간정보 등 미래 모빌리티에 활용될 고정밀 공간정보 구축을 지원하는 한편, AI 모빌리티 국가시범도시 조성, 로봇·모빌리티 친화적 건축을 위한 스마트+빌딩법 제정('26) 등 도시와 교통이 유기적으로 결합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 및 제도정비를 추진

이번 로드맵은 '미래 모빌리티와 K-AI 시티 실현' 등 이번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 및 '26~'30년 국토부 업무계획의 상세 추진계획을 담은 것으로, '25년 12월 개최된 「모빌리티 혁신성장 포럼」을 통해 초안의 주요 내용을 공개한 후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영 중인 '모빌리티혁신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확정·발표되는 것임

## 산업통상부

## 「범부처 수출확대방안」, 「무역금융 혁신방안」 발표

- 8대 전략 품목 중심 수출 다변화 추진
- 금융, 전시, 인프라 등 지원체계 혁신
- 수출기업 성장 단계별 성장 사다리 구축

2026-02-25

산업통상부는 장관 주재로 개최한 '제1차 민관합동 수출확대회의'에서 올해 7,400억 달러 수출 달성을 목표로 하는 「2026년 범부처 수출확대방안」과 「'모두의 수출'을 위한 무역금융 혁신방안」을 발표했음

정부는 고조되는 통상환경 불확실성을 넘어 올해 수출 목표 7,400억 달러 달성을 위해 ① 품목·시장 다변화, ② 지원체계 혁신, ③ 기업 성장 사다리 구축 등 3대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음

## ① 소비재, 전력기기, 바이오헬스, 방산, 원전, 자동차, 선박, 철강 등 8대 전략 품목 중심 수출 다변화 추진

소비재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올해 5차례 한류박람회를 개최하고, 온라인 해외직접판매(해외역직구)를 위한 글로벌 온라인몰도 5개 구축. AI 인프라 수요에 따른 주요 국가의 에너지 프로젝트에 우리 전력기기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프로젝트 발굴부터 기업매칭, 선제적 금융 제공까지 연계 지원. 바이오헬스 분야 경쟁력 제고를 위해 임상3상 특화 펀드를 신설('26, 1,500억원 규모)하고, 2027년까지 1조원 규모의 K-바이오·백신펜드를 조성하는 한편, 독립국가연합(CIS) 등 신흥시장 진출 지원을 위해 해외 바이오데스크를 기존 7개에서 12개로 확대 운영할 계획

## ② '모두의 수출'을 위해 금융, 전시, 인프라 등 지원체계 혁신

올해 무역보험을 역대 최대 규모인 275조원 공급해 수출기업의 유동성 확보를 지원. 대기업과 은행의 출연을 통한 상생 무역금융을 확대하는 한편, 지방 정부·공기업·은행 간 협업을 통한 지역판 상생금융 상품의 신설도 검토. 또한 소비재, AI, 방산, 원전, 플랜트 등 수출 유망산업 지원과 신흥시장 개척을 위해 금리 우대, 보증 한도 상향, 보험료 할인 등 우대금융을 제공할 계획

## ③ 수출기업 성장 단계별로 촘촘한 성장 사다리 구축

향후 5년 간 지방·영세기업 1,000개사를 대상으로 '수출희망 1,000 프로젝트'를 통해 수출 실무교육부터 온라인 수출플랫폼 입점까지 원스톱 지원하고, 지방정부와 협업해 지방의 수출초보기업 대상으로 단체 무역보험을 지원. 또한, 올해부터 5년간 천만 달러 이상 수출하는 수출 중추기업 500개사를 육성. 'K-수출스타 500 프로젝트'를 통해 기업별 맞춤형 전략 수립을 지원하고, 마케팅, 인증, 금융, R&D 컨설팅 4대 분야 패키지도 내실 있게 제공

산업통상부는 한류·인공지능(AI)·고령화 등 글로벌 트렌드에 대응하고, 정상외교와 통상협력을 강화해 소비재, 방산 등 8대 중점 품목\*을 집중 지원하겠다고 하며 지방·영세기업의 수출 첫걸음을 돕고, 유망 중소기업이 수출 중추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단계별 사다리를 구축해 수출 저변을 확대하겠다고 밝힘

## II. 입법(안) 동향

### 1. 공포 법안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부처명   | 예고 법령안         | 시행일자          |
|-------|----------------|---------------|
| 재정경제부 |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2026-02-27 시행 |

외국법인 연락사무소 현황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외국법인에 대한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법인세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해당 외국법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국가 자원안보 강화를 위해 핵심자원 및 그 소재·부품의 생산과 직접 관련된 해외 현지법인에 대한 채무보증을 채무보증 구상채권 대손금의 손금산입 범위에 추가하고, 법인의 상품 등 판매 시 판매 유형에 따라 그 판매손익의 귀속시기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며, 지방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해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가 직접 취득하는 수도권 밖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 추가 과세를 배제하는 적용기한을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                      |               |
|-------|----------------------|---------------|
| 재정경제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2026-02-27 시행 |
|-------|----------------------|---------------|

영리법인을 통한 상속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영리법인이 수유자인 경우 등에는 그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 중 상속인의 배우자 및 상속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에게도 상속세를 과세하는 등의 내용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해당 주주 또는 출자자가 납부해야 하는 지분상당액을 정하는 한편,

출연재산에 대한 상속세·증여세 비과세 대상인 공익법인 등 중 종교단체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영농상속공제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해 재산가액 산정방식 및 영농종사요건을 보완하며, 국가전략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공급망안정화기금 및 첨단전략산업기금이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증여세를 비과세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                   |               |
|-------|-------------------|---------------|
| 재정경제부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2026-02-27 시행 |
|-------|-------------------|---------------|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미래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비과세하고, 주주에 대한 배당을 통한 기업소득의 환류를 촉진하기 위해 법인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미환류소득에서 공제되는 대상에 배당을 추가하며, 기업의 배당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거주자가 고배당기업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분리과세하는 특례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청년미래적금의 가입대상 및 가입절차 등을 정하고, 미환류소득에서 공제되는 배당의 범위를 정하며, 거주자가 받는 배당소득 중 분리과세되는 특례배당소득의 범위 등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인공지능 분야 연구개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인공지능 학습용데이터의 구매비용을 세액공제 대상 연구개발비에 추가하고, 벤처투자 활성화 지원을 위해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한 경우의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하며, 소기업·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의 한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기후에너지환경부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26-02-23 시행

응축성 물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법률 제20852호, 2025. 3. 25. 공포, 2026. 3. 26. 시행)됨에 따라, 응축성 물질에 대한 심사·평가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기오염물질 심사·평가위원회의 위원 수를 늘리고, 위원의 전문 분야를 확대하는 한편,

자동차연료 첨가제 검사대행기관의 신규 진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업무의 종류별로 세분화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배출가스 연소탑인 플레어스택의 총발열량 모니터링 장치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며, 운행차 배출가스 부하검사방법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국토교통부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

2027-07-01 시행 예정

사용후 배터리 및 재제조 배터리의 정의규정을 신설하고, 사용후 배터리에 대한 성능평가제도를 도입하며, 성능평가대행자의 지정 및 취소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전기자동차 등의 사용후 배터리를 재제조 배터리로 제작·조립하려는 자는 부품제작자 등으로 등록하도록 하며, 재제조 배터리가 장착된 전기자동차 등을 유통하기 전에 안전검사를 받도록 하고, 유통 전 안전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전기자동차 등을 판매한 경우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며, 사용후 배터리의 보관 또는 운송 등을 하려는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 등은 일정한 시설, 장비 등의 기준을 갖추도록 하는 한편, 국토교통부장관은 사용후 배터리의 성능평가 결과 등에 관한 이력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이력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성능평가대행자 또는 성능시험대행자는 자동차제작자 등 또는 재제조 배터리 사업자에게 배터리 성능 등 필요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국토교통부

## 공항시설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6-02-27 시행

항공기와 조류의 충돌을 예방하기 위한 체계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항시설법」이 개정(법률 제21037호, 2025. 8. 26. 공포, 2026. 2. 27. 시행)됨에 따라,

조류충돌 예방 기본계획의 대상이 되는 비행장의 범위와 조류충돌 위험도 평가를 실시해야 하는 비행장시설의 범위, 공항별 조류충돌 위험관리계획에 포함해야 하는 사항 및 조류충돌예방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공항 주변에 새들을 유인할 가능성이 있는 환경을 만들거나 시설을 설치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여객터미널 내에서 개인형 이동장치 및 전기자전거 등의 운영을 금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국토교통부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26-02-27 시행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 건설하는 임대주택 등의 공급가격 산정 시 주택의 구조적 특성이나 복리시설의 설치 등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 을 가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6120호, 2026. 2. 19. 공포, 2. 27. 시행)된 것에 맞추어, **임대주택 등의 공급가격 산정 시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건축비 가산비용을 가산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도로, 예정도로 및 기반시설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만을 가로구역으로 인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설치가 예정된 기반시설로 일부 둘러싸인 경우까지로 확대함**으로써 기반시설예정지와 일부 접한 지역에서도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2. 입법(행정) 예고 법안 \*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부처명       | 예고 법령안            | 의견접수기간                      |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합성생물학 육성법 시행령 제정안 | 2026.02.23.<br>~2026.04.06. |

합성생물학 연구개발의 기반을 조성하고 안정성을 확보하며 합성생물학을 이용한 과학기술의 혁신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합성생물학 육성법」이 제정(법률 제20923호, 2025. 4. 22. 공포, 2026. 4. 23.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 (안 제2조 및 제3조)

#### ② 합성생물학기술지도의 작성 (안 제10조)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주요기술 동향 및 발전전망, 국내외 연구역량 등이 포함된 합성생물학기술지도를 5년마다 작성하고,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함

#### ③ 합성생물학 연구개발 거점기관 지정 요건 등 (안 제11조)

- 거점기관을 지정받으려는 기관은 연구기반 확보, 산학연 간 협조 체제 구축·운영, 재정 능력, 관련 업무 수행 실적, 우수한 연구성과 보유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청하고, 실무추진위원회의 검토를 통해 이를 확정함

#### ④ 공공바이오파운드리 운영·이용 등, 운영기관 지정요건 등 (안 제12조 및 제13조)

- 공공바이오파운드리를 이용하려는 자는 공공바이오파운드리 운영기관의 장에게 이용을 신청하여야 하고, 해당 운영기관의 장은 이용신청서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이용 승인 여부를 결정 및 통보하여야 하며 이용자는 공공바이오파운드리 이용에 따른 비용을 원칙적으로 부담하며 국가적 긴급상황에서 이용료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고 이용의 우선순위를 조정할 수 있음

#### ⑤ 합성생물학 연구데이터 공동사용 절차 등 (안 제14조)

- 합성생물학 연구주체와 운영기관은 합성생물학 연구데이터를 공동사용하기 위해서 귀속주체와 공동사용 범위 등을 포함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운영기관은 사전에 합의된 연구데이터만을 다른 연구주체의 연구개발 지원에 활용할 수 있으며, 이외의 연구데이터는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함

※ 문의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바이오융합혁신팀](tel:044-202-6188) (전화: 044-202-6188, 팩스: 044-202-6023)

|       |                 |                             |
|-------|-----------------|-----------------------------|
| 보건복지부 |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2026.02.24.<br>~2026.04.06. |
|-------|-----------------|-----------------------------|

현행 의료법령 제34조(원격의료)에 따라 원격의료를 행하거나 받으려는 자는 원격 진료실을 갖추어야 하나, 인터넷 PC가 설치된 일반진료실에서도 원격 의료가 가능하도록 개정하고자 함

※ 문의처 : [보건복지부 의료정보정책과](tel:044-202-2927) (전화: 044-202-2927, 팩스: 044-202-3941)

## 금융위원회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02.26.  
~2026.04.07.

분식회계 신고유인 제고를 위해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상한을 폐지하고, 실제 징수된 과징금 기준으로 포상금 산정·지급 추진

## ① 포상금 지급상한 폐지 (시행령안 제33조 제1항)

- (현재) 10억원 → (개정) 삭제

## ② 포상금 산정의 기준금액 및 최소금액 변경 (시행령안 제33조 제1항, 규정안 제2조 제2호, 별표)

- (현재) 부정행위의 중요도에 따라 구분한 포상금 지급한도
- (개정)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과징금 총액의 30/100

※ 문의처 : [금융위원회 회계제도팀](tel:02-2100-2695) (전화: 02-2100-2695, 팩스: 02-2100-2648)

## 금융위원회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02.26.  
~2026.04.07.

불공정거래행위 내부고발자에게 과징금 또는 부당이득의 최대 30%까지 상한없이 지급하기 위해 현재 포상금 지급상한을 전면 폐지하고 포상금 산정의 기준금액을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과징금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 ① 포상금 지급상한 폐지 (시행령안 제384조 제8항)

- (개정 전) 30억원의 범위에서 → (개정 후) 삭제

## ② 포상금의 지급 자원 규정을 고시로 위임 (시행령안 제384조 제8항)

- (개정 전) 예산의 범위에서 → (개정 후) 삭제

## ③ 불공정거래행위 신고 방법 확대 (규정안 제34조제4항 신설, 제42조의2)

- 국민권익위원회 등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이첩 또는 송부받은 경우에도 증권선물위원회 또는 감독원장으로 신고한 것으로 보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

## ④ 포상금 지급기준 변경 (규정안 제39조제1항 및 [별표1])

- 포상금 지급기준을 '기준금액(과징금 또는 부당이득의 30%)'에 '기여율'을 곱한 금액으로 단순화

※ 문의처 :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tel:02-2100-2688) (전화: 02-2100-2688, 팩스: 02-2100-2678)

### 3. 법률 발의 및 제출안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                                     |               |
|-------|-------------------------------------|---------------|
| 정무위원회 | 신산업·신기술 규제특례 등에 관한 법률안(박상혁의원 등 12인) | 2026-02-25 발의 |
|-------|-------------------------------------|---------------|

현행 신산업·신기술 분야 규제특례제도(규제샌드박스)는 6개 주관부처가 8개 분야에서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산업융합 촉진법」 등 개별 법률에 근거하여 다양한 신기술과 신산업의 혁신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음

그러나 각각의 법률에 따라 부처별로 분리하여 운영함에 따라 개별 규제샌드박스 간 심의 기준과 절차가 달라 기업 불편이 크고, 사업자 간 이해갈등이나 부처 간 이견 등에 대한 조정기제가 미흡하여 심의가 지연되는 등 제도 운영의 한계로 속도와 혁신이 중요한 신산업·신기술분야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의 한계가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음

이에 규제특례제도의 통합 관리 근거·방안을 마련하고, 국무조정실이 규제특례의 전 주기를 책임·관리하며, 개별 부처에서 다루기 어려운 핵심 규제과제를 신속하게 기획·조정하는 총괄 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신속한 규제혁신을 통해 혁신의 아이디어가 상용화로 이어져 국가경쟁력 향상과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                     |               |
|-------|---------------------|---------------|
| 정무위원회 | 회계기본법안(최은석의원 등 11인) | 2026-02-25 발의 |
|-------|---------------------|---------------|

현행 우리나라의 회계 관련 법제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사립학교법」 및 개별 법인·단체별 근거 법률 등에 분산되어 있어, 영리법인, 공공기관, 학교법인, 공익법인, 상호금융기관, 공동주택 및 집합건물 관리주체 등 다양한 법인등의 유형별로 회계처리기준, 회계감사, 회계정보의 공시 및 감독에 관한 규율 체계와 수준에 현저한 차이가 존재함. 이로 인하여 재무제표를 포함한 회계정보의 신뢰성과 비교 가능성이 저하되고, 일부 영역에서는 회계규율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여 이해관계자의 권익 보호와 사회 전반의 회계투명성 제고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이에 다양한 법인 등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회계의 기본원칙, 회계처리기준, 회계감사, 회계정보의 공시 및 감독에 관한 기본사항을 종합적으로 규정하는 회계 분야의 기본법을 제정함으로써, 각 법인 등이 일관된 회계원칙과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재무제표 등 회계정보를 작성·공시하도록 하고, 개별 근거 법률은 이 법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부합하도록 정비함으로써 회계제도의 정합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임

## 정무위원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준석의원 등 10인)

2026-02-25 발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통신판매중개가 성장하면서 소비자들이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판매하는 재화등을 사용하고 작성한 사용후기가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매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 그러나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는 통신판매중개의뢰자를 위하여 소비자의 이용후기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관리하여야 할 의무가 없어 경쟁업체의 허위사실에 기반한 후기 또는 악의적인 비방 등으로 인하여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매출 감소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통신판매중개업자는 통신판매의뢰자와 소비자 간의 통신판매중개에 관한 내용 및 소비자의 사용후기정보를 보존하도록 하는 한편, 일정 매출액 규모 이상의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는 사용후기정보의 정정·삭제 등의 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공정한 전자상거래 질서를 확보하고 통신판매의뢰자를 보호하고자 함 (안 제20조의6 신설 등)

## 정무위원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12인)

2026-02-25 발의

가맹·대리점 분야는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권을 지방정부에 위임하고 있는 한편, 하도급법은 관련 위임규정을 두지 않고 있음. 지방 기업의 접근성 제고, 법 집행 인력 부족 문제 해소 등을 위해 하도급 분야도 단순한 사실관계 판단만으로 처리 가능한 과태료 부과권 등을 지방정부에 위임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하도급법에 지방정부에 대한 권한 위임 근거규정을 신설하되, 지방정부에서 수행 가능한 하도급법 위반 행위 유형 및 지방정부별 상황을 고려한 수임 지방정부 등 그 구체적인 범위는 하위 법령에서 규정할 수 있도록 함 (안 제28조의2)

## 정무위원회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진욱의원 등 16인)

2026-02-25 발의

현행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은 벤처투자회사가 투자조합을 직접 결성·운용하는 구조를 전제로 하고 있어, 전문인력 활용과 책임 분리 등 변화된 벤처투자 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음. 또한 창업기획자의 의무투자 대상이 초기창업기업으로 한정되어 있어 후속투자 및 업력 5년 이내 유망 창업기업, 국외 창업기업에 대한 지속적 지원이 어려운 실정임

아울러 벤처투자모태조합은 정책적 중요성에 비해 법률상 공시 의무가 명확하지 않아 운용의 투명성과 신뢰성 제고에 한계가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벤처투자 참여 역시 특정 기금 설치 여부에 따라 제한돼 지역 여건에 맞는 자율적인 벤처투자 활성화를 저해하고 있음

이에 투자조합운용전문회사 제도를 도입해 벤처투자 운용 구조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고, 창업기획자의 의무투자 대상을 업력 5년 이내 창업기업과 후속투자 대상 및 국외 창업기업까지 확대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벤처펀드 출자 대상을 넓힘으로써 민간투자 연계 강화와 벤처투자 시장의 투명성 및 지역 기반 투자 활성화를 도모하려함 (안 제2조제10호의2 신설 등)

## 정무위원회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의원 등 11인)

2026-02-26 발의

현행법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나 심의를 받고 있는 사업자가 스스로 시정방안을 제시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법 위반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동의의결 제도를 2011년부터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확정된 동의의결을 정해진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을 때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의 상한이 유럽연합, 미국 등 해외 법제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임. 동의의결 불이행이 있는 경우 유럽연합은 1일당 직전연도 일 평균매출액의 5%까지, 미국은 미화 53,088달러(2025년 기준)까지 부과할 수 있는 반면, 국내의 경우 1일당 부과 한도가 200만 원에 불과한 실정임

이에 동의의결 불이행 기간에 대해 1일당 사업자 일 평균매출액의 5%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매출액이 없는 경우 등에는 1일당 2,000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동의의결 이행을 효과적으로 담보하고 동의의결 제도 운용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안 제92조제1항)

## 정무위원회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의원 등 11인)

2026-02-26 발의

현행법은 하도급관계에서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상한을 하도급대금의 2배로 규정하면서, 하도급대금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 등에 있어 정액과징금의 상한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한편, 현 시행령상 정액과징금을 정하면서 20억 원 이내에서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현재의 경제규모 및 시장상황 등을 고려할 때 이를 상향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법상 모든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정액과징금의 상한을 100억원으로 상향함으로써 법 위반 억제력을 제고하고자 함 (안 제25조의3제1항)

## 정무위원회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의원 등 11인)

2026-02-26 발의

현행법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하여 관련매출액의 100분의 2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최대 5억원(사업자단체가 가입 사업자의 표시·광고를 제한하는 행위를 한 경우도 동일)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최근 기만 광고의 유형이 다양해지고 소비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거짓·과장 광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과징금 수준은 광고를 통해 얻은 부당이익을 충분히 환수하거나 법 위반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기에는 미흡한 측면이 있음. 따라서 주요국의 입법례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의 유사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과징금 수준을 고려하여 과징금 부과 한도를 합리적으로 상향함으로써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과징금의 정률 상한을 관련매출액의 100분의 2에서 100분의 10으로, 정액 상한을 5억원에서 50억원(사업자단체가 가입 사업자의 표시·광고를 제한하는 행위를 한 경우는 20억원)으로 상향하여 위법한 표시·광고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안 제9조)

## 정무위원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근의원 등 16인)

2026-02-26 발의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해 국민의 생명·안전 등 중요법익과 관련성이 적은 단순 행정상 의무·명령 위반행위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는 한편, 형벌의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시정명령을 먼저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만 형사처벌하도록 하되, 이로 인해 법위반 억지력이 약화되지 않도록 과징금 등의 금전적 제재를 도입하려는 것임. 아울러, 현행법상 과징금 상한은 해외 법제 등과 비교할 때 낮은 수준이어서 법 위반을 억제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는데, 일례로,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의 경우 유럽연합과 일본에서는 법 위반으로 발생한 매출액의 각 30%, 15%까지도 과징금 부과가 가능함에도, 우리의 경우 상한이 6%에 불과한바, 위반유형별 과징금 상한을 법 위반 억제 기능을 할 수 있는 합리적인 수준으로 상향하려는 것임

## ① 선 행정제재, 후 형벌 부과로 전환

-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시장지배력 남용행위 및 기업결합 및 경제력 집중 억제 시책 관련 일부 위반행위에 대하여 먼저 시정조치와 함께 과징금·이행강제금 등 금전적 제재를 부과하는 등 행정제재를 통해 의무이행을 확보하도록 하고 (안 제124조제1항), 금전적 제재 규정이 없는 위반행위의 경우에는 과징금·이행과징금 등 부과 근거를 신설하며 (안 제16조제1항, 제38조제2항, 제4항 및 제5항), 시정조치를 불이행할 경우에 법 제125조제1호에 따라 형벌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② 과징금 부과수준 합리화

- 법 위반유형별 과징금 상한을 법 위반 억제 기능을 할 수 있는 합리적인 수준으로 상향함 (안 제8조, 제43조, 제50조 및 제53조)

## ③ 절차적 의무에 대한 형벌 폐지 및 과태료 도입

- 지주회사 설립·전환 신고의무, 보고서 제출의무, 대기업집단 소속 회사의 주식소유 현황, 채무보증 현황 신고의무 등 중대성이 크지 않은 단순한 절차적 의무에 대한 형벌을 폐지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안 제126조, 제130조제1항제2호, 제3호 및 제7호)

정무위원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남근의원 등 17인)

2026-02-26 발의

현행법은 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을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해서만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중대한 법 위반 행위가 발생했을 때 곧바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음. 또한 개인정보 유출 시 사업자에 대한 제재 수단이 없음. 전자상거래 시장이 날로 성장하여 국민의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현실을 고려할 때 이러한 과징금 부과 체계로는 법 위반 억제력을 충분히 담보하기 어려움

이에, 대규모 소비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소비자 기만 행위, 소비자의 청약 철회를 방해하는 행위, 눈속임 상술(다크패턴), 개인정보 유출 등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 없이 곧바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현행법의 실효성을 개선하려는 것임 (안 제34조의2 등)

한편, 현행법은 법위반 사업자인 회사가 다른 회사와 합병한 경우에는 해당 회사가 한 위반행위를 합병 후 존속 하거나 합병으로 설립된 회사가 한 행위로 보아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회사가 분할되거나 분할합병된 경우의 처리에 대해서는 이를 정하고 있는 규정이 없어 과징금 부과·징수에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합병 및 분할 관련 조항을 준용하여 입법적 공백을 보완하려는 것임 (안 제39조제4항 등)

정무위원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의원 등 11인)

2026-02-27 발의

현행법은 하도급관계에서 대부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원사업자에 대하여 하도급대금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과도한 형벌 중심의 제재는 기업의 경영을 위축시키나 위법행위 억제 효과는 제한적이므로 실효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서면발급 및 보존의무 위반, 대금·선금금 등 미지급, 부당반품 금지 위반, 부당 대물변제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원사업자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등 행정제재를 먼저 하도록 하고 그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만 형사처벌을 하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30조제1항)

## 정무위원회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의원 등 11인)**

2026-02-27 발의

현행법은 배타적 거래 강요, 경영정보 제공 요구, 경영활동 간섭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대규모유통업자에 대하여 즉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과도한 형벌 중심의 제재는 기업의 경영을 위축시킬 뿐 실질적인 억제 수단이 되지 않으므로 실효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앞으로는 배타적 거래 강요, 경영정보 제공 요구, 경영활동 간섭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대규모유통업자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등 행정제재를 먼저 하도록 하고 그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만 형사처벌을 하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39조제1항)

## 정무위원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혁진의원 등 10인)**

2026-02-27 발의

프랜차이즈 가맹사업 구조상 가맹점사업자는 정보·협상력의 비대칭으로 인하여 비용과 위험이 일방적으로 전가되는 부당하고 은폐된 계약구조에 놓이는 경우가 발생하기 쉬움. 이로 인하여 성실히 영업하더라도 손익분기 달성을 하지 못하고 경기 침체·소비 변화 등 외부 요인까지 더해져 경영 악화가 가속되는 경우가 많음. 그러한 이유로 계약을 정리하려 하여도 폐업·철수조차 어려워 손실이 누적되면서 부채 확대와 생계 붕괴까지 이어지는 위험이 커지고 있음. 특히 계약해지에 대한 과도한 위약금 조항이 사실상 퇴로를 차단하여 계약 종료라는 선택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아니하는 등 거래상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왔음

이에 귀책사유 없는 경영 악화 시 법정 계약해지권을 명문화하고 위약금 청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예외적으로 부과되는 경우에도 상한을 두어 부담을 통제하고자 함. 아울러 가맹점사업자의 고의·중과실 등 예외 사유를 가맹본부가 입증하도록 하여 거래상 힘의 불균형을 조정하고자 함. 이를 통하여 단기적으로는 소상공인의 선택지를 보장하여 폐업→부채→가계붕괴로 이어지는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중장기적으로는 가맹본부가 위약금에 의존하기보다 상생과 수익성 개선을 통하여 가맹사업을 운영하도록 유도함으로써 프랜차이즈 산업의 지속가능성과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재정경제기획 위원회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현희의원 등 20인)

2026-02-24 발의

민간투자사업은 사업의 기획·타당성 검토부터 실시협약 체결, 착공 및 준공에 이르기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총사업비 산정 이후 준공 시점까지 상당한 기간 동안 물가 변동이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임. 그러나 현행법은 물가변동으로 인한 총사업비 조정에 관한 명확한 법률상 근거 규정이 부재하여, 실제 사업비 조정 기준은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등 행정지침에 의존해 운영되고 있음. 이로 인해 사업 방식(BTO·BTL)에 따라 서로 상이한 물가지수가 적용되는 등 합리성과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특히 동일한 건설공사임에도 불구하고 재정사업의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률에 근거한 물가변동 반영 기준이 적용되는 반면, 민간투자사업은 법률상 근거 없이 지침에 의해 상이한 기준이 적용되고 있어, 사업비 산정의 합리성 및 예측가능성을 저해하고 민간투자사업 추진 과정에서 불필요한 갈등과 불확실성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이에 민간투자사업에 있어서도 재정사업과 마찬가지로 물가변동 등을 합리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여 사업비 산정의 합리성·투명성 및 제도적 일관성을 제고하고 민간투자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안 제13조의2 신설)

#### 재정경제기획 위원회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의원 등 10인)

2026-02-24 발의

자유무역협정(FTA)의 확대에 따라 원산지증빙 및 용도세율 적용 등 관련 제도를 활용하는 기업이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경미한 과실이나 행정상 의무 위반에 대해서까지 형사처벌을 부과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국민의 생명·안전과 관련이 적은 단순 행정상 의무·명령 위반행위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거나, 행정제재로서 입법목적 달성이 가능한 경우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고의성이 낮은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과태료 등 행정질서벌로 전환하고 일부 과태료 수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기업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재정경제기획  
위원회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의원·  
구자근의원 등 23인)

2026-02-24 발의

현행법은 수도권 밖으로 공장 또는 법인 본사를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법인 본사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데 따른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등 수도권 과밀화를 억제하고 지역균형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에 인구와 일자리가 과도하게 집중되어 청년층 및 경제활동인구의 지방 유출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비수도권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 산업기반 약화 등 구조적 위기에 직면하고 있음

이에 **비수도권 지역의 기업에 취업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소득세 산출세액의 일정 비율을 감면하는 특례를 신설**하여 비수도권 기업의 인력 확보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안 제63조의4 신설)

재정경제기획  
위원회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의원 등 10인)

2026-02-24 발의

현행법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법인 외에는 전국적으로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고 있음. 그러나 헌법 제123조에 명시된 지역간 균형발전이라는 목표 아래 역대 정부에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예산을 투입했으나 수도권과 비수도권과의 격차는 점점 확대되고 있음

또한, 수도권이나 수도권에 가까운 지역일수록 자본과 인프라가 밀집되어 있어 기업활동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어 있으나, 수도권에서 멀수록 인력부족과 접근성 저하 등 구조적 제약 요인이 많이 있어 지역 간 현실적 불균형을 조정하고 민간 기업의 지역 투자와 정착을 유인할 수 있는 보다 장기적인 조세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수도권 외에 소재하는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함으로써 기업들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방으로 이전하거나 정착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안 제55조제1항제1호)

## 국방위원회

##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백선희의원 등 13인)

2026-02-24 발의

현행법은 방위력 개선사업의 입찰자가 핵심기술 등을 계약목적물에 적용하는 경우 낙찰자 결정 시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 인센티브 제공 근거를 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글로벌 방위산업 시장은 단순한 기술력 경쟁을 넘어 지속가능경영 준수 여부가 수출을 결정 짓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방위산업체의 경영 환경 선진화와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적 유인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방위사업계약에 따른 낙찰자 결정 시 지속가능경영 활동 성과를 고려하여 가산점 부여 등의 우대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존의 기술 중심 인센티브 조항을 포괄적인 계약 인센티브 조항으로 개편하여 다양한 정책적 가치를 반영하려는 것임 (안 제46조의3제1항)

## 국방위원회

##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선희의원 등 13인)

2026-02-24 발의

현행법은 방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방산물자등의 연구개발, 부품 국산화 및 수출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미국·유럽연합(EU) 등 주요 방산물자등의 수출국들이 탄소중립 등 높은 수준의 지속가능경영 준수를 요구하고 있어 자금과 전문 인력이 부족한 중소·중견 방산업체등이 변화하는 통상 환경에 대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방위산업체등이 지속가능한 경영 활동을 추진할 수 있도록 방위사업청장이 방위산업 특성에 맞는 지속가능경영 기준과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방위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조성하고 수출 경쟁력을 제고하려는 것임 (안 제10조의3 신설 등)

## 국방위원회

##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선영의원 등 10인)

2026-02-26 발의

현재 국방·군사시설 내 대피시설의 설치는 국방부 지침인 「국방·군사시설 기준」에 따라 설치되고 있음. 그런데 남북 간 군사적 긴장과 자연재난의 위험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군인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대피시설의 설치에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는 설치 의무와 예산 편성의 강제성이 미흡하여 시설 확보에 한계가 존재함

이에 국방·군사시설의 사업시행자가 건축등의 승인을 받을 경우 군사 대피시설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건축등의 세부계획을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국방·군사시설의 실태조사 결과 군사 대피시설이 설치되지 않았거나 설치된 시설이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관련 예산을 편성하도록 함으로써 변화하는 안보 환경과 재난 위협 속에서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군인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국가 안보를 강화하려는 것임 (안 제8조제1항 및 제14조의3제3항)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의원 등 17  
인)

2026-02-23 발의

현행법은 연구결과(목표달성도) 중심 평가체제로 인해 목표 미달시 연구개발비 감액, 과제중단, 극히 불량 시 제재조치 등 불이익을 우려하여, 연구자들이 도전적 연구를 추진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왔으며, 과제의 선정평가 시 평가기준에 ‘목표의 도전성’ 관련 사항이 부재함. 또한, 과제가 우수한 경우 후속과제 연계가 가능하나 이와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는 선정평가로 인해 우수성과 확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음

연구혁신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과제계획 시부터 혁신적 연구목표가 설정되고, 목표 미달성한 경우에도 성실히 연구수행 시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한 실정임. 또한, 우수과제 연구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우수한 과제의 후속과제는 선정평가 없이 추진되도록 법 개정 필요한 실정임. 아울러, 우수성과 활용·확산과 기술이전 수익 증대를 위해 성과의 가치 제고목적의 사용 용도를 법률에 명시하고, 비영리 기관의 기관별 기술료 사용기준 준수 여부 등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근거 마련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우수과제의 후속과제를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연구과제의 선정평가 시 평가기준으로 ‘목표의 혁신성’을 추가하여 높은 수준의 목표를 제시한 연구과제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과제선정 시 ‘연구목표의 혁신성’을 평가하도록 하며, 기술이전 수익 증대 목적의 기술료 사용 근거 및 기술료 사용 결과를 조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아울러 평가등급 개편에 맞춰 과제평가 관련 제재처분 대상을 기존 ‘수행과정 및 결과가 극히불량’에서 ‘수행과정이 부적절’한 경우로 개선하고자 함 (안 제9조제4항제6호 신설, 제10조제2항제1호, 제18조제5항제3호 신설 등)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장겸의원 등 10인)

2026-02-27 발의

최근 한국소비자원은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시중에 유통 중인 로봇청소기 6개 제품의 보안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사생활 침해 및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이 확인됨에 따라 조사 대상 모든 사업자에게 보안성 향상을 위한 조치를 권고하였으며, 아울러 소비자에게도 안전한 비밀번호 설정 및 주기적인 보안 업데이트 등 기본적인 보안 관리에 유의할 것을 당부한 바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보안 규제는 마련하고 있으나 정보통신망에 연결되어 데이터를 수집·처리·전송하는 사물인터넷(IoT) 제품 자체의 보안 실태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그 결과를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미비한 실정임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보통신망의 안정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정보통신망연결기기 등에 대한 보안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IoT 제품의 보안 수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소비자에게 정확한 보안 정보를 제공하여 안전한 IoT 제품 이용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안 제48조의7 신설)

문화체육관광  
위원회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의원 등 12인)

2026-02-23 발의

현행법에 따르면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등급분류한 온라인비디오물의 등급 및 내용정보와 등급분류를 하거나 할 예정인 온라인비디오물에 관한 광고·선전물의 청소년 유해성 확인 결과 등을 영상물등급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온라인비디오물의 제작·수정·유통 과정은 수시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자체등급분류 결과에 대한 영상물등급위원회의 관리·점검 또한 실시간에 가까운 대응이 요구됨에도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통보시기가 지체될 경우 불법비디오물 등으로 인한 이용자 및 청소년의 피해가 확산될 우려가 있음

이에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등급분류한 온라인비디오물의 등급 및 내용정보와 광고·선전물의 청소년에 대한 유해성 여부의 확인 결과 등을 영상물등급위원회에 2일 이내에 통보하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통보 의무의 이행 시점을 명확히 하고 자체등급분류제도의 투명성과 관리·감독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안 제50조의4 및 제66조의2제2항)

문화체육관광  
위원회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의원  
등 10인)

2026-02-25 발의

현행법은 게임산업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및 교육·훈련 비용 지원 등의 근거를 두고 있으나 전문인력 양성 이후 실제 취업과 채용으로의 연계, 채용 후 현장 적응 및 직무역량 제고 등 고용 연계를 촉진하기 위한 지원 근거는 명확하지 않음

이에 게임산업 전문인력의 원활한 취업 및 고용 연계를 촉진하기 위하여, 전문인력 양성기관과 게임물 관련사업자 간 채용 연계 지원, 신규 채용 사업자에 대한 비용 일부 지원, 채용 인력의 현장 적응·재교육·직무훈련 등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게임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과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함 (안 제5조 제5항 신설)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의원 등 12인)

2026-02-23 발의

현행법은 상표 보호를 목적으로 상표권 침해행위를 규제하고 있으며, 지식재산청은 이에 따라 위조상품 단속지원 등 상표권 보호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국내 브랜드 제품에 대한 해외 수요 증가와 함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거래가 확대되면서 이를 악용한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이 증가하고 있어, 온라인 환경에서의 상표권 침해 예방 및 대응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지식재산처장의 온라인 모니터링 실시 및 정보시스템 구축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일정 규모 이상인 온라인상품판매매개자가 상표권 침해 예방을 위하여 모니터링을 하도록 하되, 미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현행 상표권 보호체계를 보완·정비하려는 것임 (안 제2조제1항제12호 신설 등)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의원 등 13인)

2026-02-23 발의

현행법은 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를 원칙으로 하고, 행사 요건 및 부여 대상 등을 규정하여 제도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제도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때마다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는 절차적 부담과 장기간의 행사 제한기간 등으로 인하여, 벤처기업이 주식매수선택권을 우수한 인재의 확보 및 유지를 위한 성과연동형 보상 수단으로 적극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주식매수선택권 제도 운영의 유연성을 제고하고 성과에 기반한 보상이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개선하려는 것임.

- ① 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 총 부여 한도는 정관으로 정하되, 그 한도 내 개별 부여는 이사회 결의로 하도록 함 (안 제16조의3제1항)
- ②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대상에 벤처기업 자회사의 임직원을 포함하도록 함 (안 제16조의3제1항제2호의2 신설)
- ③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 조정에 관한 사항을 이사회 결의사항에 포함하도록 함 (안 제16조의4제2항제5호 신설 등)
- ④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이사회 결의가 있는 날부터 1년 이상 재임·재직하는 경우 이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6조의5제1항)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권향엽의원 등 11인)

2026-02-25 발의

현행법은 지역 산업 및 경제 여건 악화에 대응하여 해당 지역과 산업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시·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또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 후 산업위기가 심화된 경우에 다음 단계인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신속하게 전환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지원사업의 적기를 놓친다는 지적이 있으며,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만료 후 필요한 후속 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지역 산업 및 경제의 회복탄력성이 저하된다는 의견이 제시됨. 또한 현행법에 산업위기지역 지원사항은 열거되어 있으나 관계부처의 협조 및 지원에 관한 근거 규정은 부재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에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의 신속한 전환 절차,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만료 후 후속 지원체계 등을 마련하고, 산업위기지역 지원요청 사업에 대한 관계부처의 협조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지역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의 조속한 회복에 기여하려는 것임 (안 제2조 등)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의원 등 11인)

2026-02-25 발의

현행법은 산업융합 신제품 및 서비스에 대해 규제특례와 임시허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규제 특례를 통해 기술력을 검증받은 스타트업과 중소기업들이 협소한 국내 시장의 한계와 복잡한 수출 행정 장벽으로 인해 해외로 유출되거나 판로 확보에 실패하는 사례가 빈번하여, 어렵게 창출한 산업융합 성과가 국가 경제의 실질적 성장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를 노출하고 있음

이에 본 개정안은 **산업통상부장관이 규제특례 및 임시허가 부여 현황, 법령 정비 계획과 추진 실적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매년 보고하도록 의무화**하여 산업융합 정책의 지속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안 제10조의8 신설)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의원 등 11인)

2026-02-26 발의

최근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과 공급망 재편이 가속화되면서 외국인투자는 단순한 자본 유입을 넘어 국가의 안보와 직결될 수 있는 사안으로 그 성격이 확대되고 있음. 현행법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외국인투자가 국가의 안전유지에 지장을 주는지 여부를 심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판단에 필요한 자료를 관계기관으로부터 확보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고, 관계기관 또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실효성 있는 안보위험 평가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외국인투자의 국가안보위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요청을 받은 기관이 해당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현행 심사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또한 국가정보원장을 조사 주체에 포함하되 그 권한을 국가안보위해 여부 판단에 한정하고, 조사 대상을 기존의 “투자한” 경우에서 “투자하거나 투자할” 경우까지 확대하여 사전적 예방심사를 강화하려는 것임 (안 제28조)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회**

**북극항로 활용 촉진 및 연관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임미애의원 등 10인)**

2026-02-23 발의

기후변화로 북극해 해빙이 가속화되면서 북극항로가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새로운 국제 해상 물류 경로로 부상하고 있음. 북극항로는 기존 수에즈 운하 경유 항로 대비 항해 거리를 약 30% 이상 단축할 수 있어 물류비용 절감과 해운 공급망 다변화 측면에서 전략적 가치가 높음

최근 홍해 지역의 지정학적 불안정으로 수에즈 운하 항로의 안전성이 저하되고 중동 지역 에너지 수송로에 대한 의존도 완화 필요성이 커지면서 북극항로의 대안적 가치가 더욱 부각되고 있음. 미국, 러시아, 중국 등 주요국은 이미 북극항로를 국가 전략자산으로 인식하고 인프라 투자와 정책 지원을 확대하고 있음

우리나라는 2013년 북극이사회 옵서버 지위를 획득한 이후 2016년까지 시범운항을 실시하는 등 일정한 성과를 거뒀지만 그간 정책이 연구·협력 중심에 머물러 북극항로의 상업적 활용과 연관산업 육성을 위한 체계적 기반이 미흡했음. 특히 우리나라는 포항을 중심으로 한 환동해권에 철강·자동차 부품·반도체·이차전지 산업이 집적돼 있어 북극항로 활성화를 통한 산업 경쟁력 강화의 잠재력이 큼. 특히 포항 영일만항은 동해안 유일의 복합 기능항만으로서 북극권 에너지·자원 도입과 저탄소철강 제품 수출의 전략적 거점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음

이에 북극항로의 사업적 활용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연관산업을 국가 전략 차원에서 육성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회**

**헴프산업 육성 및 헴프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윤준병의원 등 11인)**

2026-02-25 발의

현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대마를 산업용, 의료용 등 용도별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대마초와 그 수지(樹脂), 그 수지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제품 등으로 정의하여 관리하고 있는데,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tetrahydrocannabinol) 농도(이하 “유해성분 농도”라 한다)가 지극히 낮아 환각성·중독성이 없는 대마초 품종까지도 동일하게 마약류로 규제하고 있음

그런데 미국, 유럽연합 등 다수의 해외 국가에서는 칸나비스속 식물 중 유해성분 농도가 일정 기준 이하인 대마초 품종을 헴프로 정의하여 기존의 마약류 대마와 구분하고, 이를 섬유, 식품, 의약·의료, 바이오소재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재배·가공·유통 등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관련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대마는 섬유 및 종자 채취를 위한 제한적 재배, 대마초 종자 및 종자유 등 일부 식품, 공무·학술연구·의료 목적으로 승인받은 경우 외에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어 헴프의 산업적·경제적 활용 가능성이 충분히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유해성분 농도가 낮은 대마를 ‘헴프’로 명확히 정의하고, 헴프의 재배·가공·유통·판매 등 전 과정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의료·식품, 산업용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합리적 활용이 가능하도록 근거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헴프 관련 산업의 건전한 육성과 국민안전 확보를 동시에 도모하려는 것임

## 보건복지위원회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백종헌의원·서미화의의원 등 17인)

2026-02-27 발의

현행법에 따르면 의약품의 품목허가 등을 받은 자는 의약품의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에 따라 제조 및 품질관리 체계를 유지하여야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에 관한 기록을 반복적으로 거짓·잘못 작성하는 행위 등에 대하여 적합판정을 취소하거나 시정명령을 하는 등의 처분을 할 수 있음. 그런데 제조 및 품질관리에 관한 기록의 종류가 매우 방대한바, 기록의 종류에 관계없이 모든 기록을 반복적으로 거짓·잘못 작성한 행위에 대하여 적합판정을 취소하는 경우 기업의 활동이 위축될 우려가 있음

아울러, 현재 적합판정 취소는 ‘반복적인 기록의 거짓·잘못 작성’이 적용 대상이므로, 최근 적합판정 취소 처분을 회피하기 위해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록을 의도적으로 작성하지 않거나, 보존하지 않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허가사항과 다르게 의약품을 임의로 변경하여 제조하고 모든 제조공정이 기존 허가사항과 동일하다고 제조기록서를 거짓작성하는 경우’를 중대한 위반으로 명확하게 구분하여 규정하는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하여금 필요한 경우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적합판정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행정제 재처분의 수위가 위반행위의 정도에 비례할 수 있게 하고,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에 관한 기록을 작성·보존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적합판정 취소 대상에 포함시키려는 것임 (안 제38조의3제3항 및 제4항)

기후에너지  
환경노동위원회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등 13인)

2026-02-24 발의

회생전력이란 전동차량 등을 감속 또는 제동할 때 운동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변환하여 재사용하는 전력을 말함. 특히 철도차량의 경우 운행 특성상 빈번한 가·감속으로 인해 상당한 규모의 회생전력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며, 적절한 설비와 제도적 지원이 이루어질 경우 에너지 이용 효율 제고와 온실가스 감축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음

그런데 현행 제도하에서는 철도 회생전력의 회수·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명확한 법적 근거와 정책적 지원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특히 한국전력공사의 전력계량 및 정산 기준의 변화로 인해 철도 회생전력이 에너지 이용 효율 향상 성과로 인정되거나 제도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여지가 축소되면서, 철도사업자가 회생전력을 적극 생산·활용하도록 하는 유인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철도차량 및 전기철도 설비의 운행 또는 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에너지를 회수·저장·활용하기 위한 설비와 사업을 에너지이용 합리화 정책의 주요 지원 대상으로 규정하여, 금융·세제상의 지원을 우선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철도 회생전력의 활용을 촉진하고, 에너지 이용 효율 제고 및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안 제14조제3항 신설)**

기후에너지  
환경노동위원회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은혜의원 등 21인)

2026-02-25 발의

현행법은 제2조에서 중대시민재해를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 정의하고 있음

지난 2024년 12월 29일 발생한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는 항행안전시설 중 하나인 로컬라이저(방위각 제공시설)와 그 기반시설인 콘크리트 둔덕이 그 사고 발생의 핵심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음. 그런데 이와 같은 항행안전시설은 그 잠재적 사고발생의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중대시민재해의 요건인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항행안전시설과 그 기반시설 또는 부속시설로서 재해 발생 시 생명·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시설을 중대시민재해와 관련한 요건으로 명시하여 국민의 안전을 보다 강하게 보호하려는 것임 (안 제2조 및 제9조)**

기후에너지  
환경노동위원회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의원 등 13인)

2026-02-25 발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에도 산업 현장에서 사망사고 발생이 감소하지 않고, 특히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서 반복해서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있음. 현행법은 사업장의 위험설비 등 자율안전검사를 사업주가 실시하도록 하고 있지만, 고용노동부에 대한 제출 의무가 없어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자율안전검사 대상 기계로 인해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의 위험설비 자율안전검사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출된 자율안전검사 결과를 심사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대재해 발생을 보다 효과적으로 예방하려는 것임 (안 제98조제3항, 제98조의2 신설 등)

#### 기후에너지 환경노동위원회

####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의원 등 10인)

2026-02-26 발의

현행법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 또는 변경협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거나 절차가 끝나기 전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에 관한 공사를 하지 못하도록 하여 사전공사를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의 경우 착공을 준비하기 위한 현장사무소 설치 공사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공사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한 공사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사전공사를 허용하고 있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인 사업과 형평성 위반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 작용할 여지가 있음

이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에 대해서도 사전공사의 금지에 대한 예외 규정을 두어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 간의 형평성 제고와 규제 완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안 제47조제1항 단서 신설 등)

#### 국토교통위원회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의원 등 10인)

2026-02-26 발의

현행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령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을 수반하는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자(이하 “개발계획수립자”)는 5만제곱미터 이상의 정비계획 수립 시 1세대당 2제곱미터 이상의 도시공원 또는 녹지를 확보하여야 하고, 1천세대 이상의 정비계획의 경우 1세대당 3제곱미터 이상의 도시공원 또는 녹지를 확보하여야 함

그러나 세대당 기준에 따라 도시공원 또는 녹지를 확보하도록 규정할 시 개발계획수립자에게 작은 평형대의 주택보다는 상대적으로 큰 평형대의 주택을 공급하고자 할 유인이 생겨 수도권 등지의 주택공급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또한, 정비계획지 주변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규정으로 인하여 불필요한 도시공원 또는 녹지를 확보하게 되어 이에 대한 관리비 등 추가적인 예산 소요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 내 면적이 15만제곱미터 미만의 정비구역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건설·공급되는 건축물의 전체 연면적 120제곱미터당 2제곱미터 이하의 도시공원 또는 녹지를 확보하도록 함으로써 주택공급을 활성화하고자 함 (안 제68조제4항)

국토교통위원회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손명수의원·  
김은혜의원 등 24인)**

2026-02-27 발의

건설산업은 국가 경제 성장을 견인하고 도로, 철도, 주거 등 사회기반시설(SOC) 건설을 통해 국민 생활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는 기간 산업이며, 건설기술인은 건설산업의 핵심 주체로서 기획·설계·시공·안전확보 및 유지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핵심 인적자원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설기술인은 프로젝트 단위의 고용구조와 건설산업의 경기 변동성으로 인해 고용 불안정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있으며, 고위험·고강도 노동 환경 속에서도 체계적인 복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로 인해 우수한 청년 인재의 유입이 감소하고 있고 건설산업의 전문성 약화와 인력 고령화 문제가 심화되고 있음. 현재 건설관련 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공제조합과 건설근로자를 위한 공제회는 운영되고 있으나, 건설기술인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복지·공제제도는 부재하여 직역 간 형평성이 저해되고 있으며, 건설기술인의 경력 유지와 생활 안정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미흡한 실정임

이에 건설기술인의 생활 안정과 복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건설기술인 공제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제도적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건설기술인의 처우를 개선하고 건설산업의 지속 가능한 경쟁력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 (안 제70조의2 신설)

국토교통위원회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안태준의원  
등 10인)**

2026-02-27 발의

주택, 오피스텔, 상가, 생활숙박시설, 지식산업센터 등 다양한 유형의 부동산 상품에 대한 분양 현장에서 서류의 확인, 계약 체결, 분양 관련 상담, 마케팅 등 분양대행 업무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분양대행업이 법적 제도권 밖에 머물러 있어 체계적인 관리·감독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한편, 분양대행업이 동법상 부동산서비스의 범주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이러한 정책수단이 분양대행업에는 적용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특히, 2024년 통계청이 한국표준산업분류 11차 개정 시 부동산분양대행업(68224)을 업종 세분류로 신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진흥법에는 분양대행에 관한 법적 정의가 규정되지 않아 제도 간 괴리가 존재하는 현실임. 나아가, 「주택법」,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등 개별법은 사업주체 또는 건축주가 분양업무의 일부를 제3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그 대행자의 자격요건과 의무를 규정하고 있을 뿐, 분양대행 자체를 하나의 서비스업으로 정의하고 있지 아니함

이에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상 부동산서비스의 범주에 분양대행을 포함함으로써, 분양대행업에 대한 실태조사, 통계·정보 수집, 전문인력 양성 등 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수단을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III. 국회 주간 의사일정(안)

#### 1. 위원회 일정

| 구분  |                | 일시           | 내용                              |
|-----|----------------|--------------|---------------------------------|
| 과방위 | 정보통신방송<br>법안소위 | 3/3(화) 10:00 | - 법안 심사                         |
| 국방위 | 법안소위           | 3/4(수) 10:00 | - 법안 심사                         |
|     | 전체회의           | 3/5(목) 10:00 | - 국방반도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 |
|     | 전체회의           | 3/5(목) 14:00 | - 법안 의결, 업무보고(국방부·병무청·방위사업청)    |
| 문체위 | 전체회의           | 3/4(수) 10:00 | - 업무보고                          |

## IV. 국회 주요 행사(토론회, 세미나, 자료집)

| 구분              | 일시              | 내용                                       | 주최            | 장소             |
|-----------------|-----------------|------------------------------------------|---------------|----------------|
| 토론회<br>및<br>세미나 | 3/3(화)<br>14:00 | KTCS(한국형열차제어시스템) 전국철도망 구축과 해외시장 진출 정책토론회 | 손명수 의원실       | 의원회관<br>1소회의실  |
|                 | 3/3(화)<br>14:30 | K-POP 다음 단계를 이야기하다!                      | 박정하 의원실       | 의원회관<br>1간담회의실 |
|                 | 3/4(수)<br>08:00 | AI 정책과 진보적 입법 전략                         | 전종덕 의원실       | 의원회관<br>3간담회의실 |
|                 | 3/4(수)<br>10:30 | 우리나라 비만 환자의 미충족 의료 수요 반영을 위한 정책 토론회      | 서미화 의원실 등     | 의원회관<br>5간담회의실 |
|                 | 3/5(목)<br>10:00 | 오버투어리즘 대응을 위한 주거지역 관광사업 관리의 한계와 개선 방향    | 김소희·박정하 의원실 등 | 의원회관<br>9간담회의실 |
|                 | 3/5(목)<br>10:00 | 디지털자산 법인시장 개방과 신뢰 인프라 구축 과제 학술 컨퍼런스 개최   | 김현정 의원실       | 의원회관<br>7간담회의실 |
|                 | 3/5(목)<br>10:00 | 주주행동주의 시대, 기업을 흔드는 상법 개정 대응 전략           | 유상범 의원실 등     | 의원회관<br>2간담회의실 |
| 자료집<br>등        | 3/3(화)          | 「최신외국입법정보」 제2026-3호(통권 제291호) 발간         | 국회도서관         |                |
|                 | 3/4(수)          | 「금주의 서평」 제2026-8호(통권 제767호) 발간           |               |                |
|                 | 3/5(목)          | 「금주의 보고서」 제2026-7호(통권 제39호) 발간           |               |                |

※ 위 토론회 및 세미나 관련 자료들은 추후 제공 예정

## [별첨] 지난 호 세종Law Focus(제320호) 중 국회 주요 행사 관련 자료 첨부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구분       | 일시      | 내용                           | 주최      | 장소 |
|----------|---------|------------------------------|---------|----|
| 자료집<br>등 | 2/25(수) | 「Data&Law」 제2026-1호(통권 제39호) | 국회도서관   |    |
|          | 2/25(수) | 「금주의 서평」 제2026-7호(통권 제766호)  |         |    |
|          | 2/26(목) | 「Data+」 제2026-2호(통권 제26호)    | 국회예산정책처 |    |

## V. 법무법인(유) 세종 주요 뉴스레터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일시      | 분야       | 내용                                                                                                                 |
|---------|----------|--------------------------------------------------------------------------------------------------------------------|
| 2/23(월) | 바이오/헬스케어 | <a href="#">GMO 완전표시제 도입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a>                                                                           |
| 2/23(월) | 해외 규제    | <a href="#">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대한 대응방안 및 향후 전망</a>                                                              |
| 2/23(월) | 지적재산권    | <a href="#">중국인이 지배하는 미국 기업의 미국 반도체 사업 인수 무효화 및 시사점</a>                                                            |
| 2/24(화) | 에너지·자원   | <a href="#">해외 투자개발사업 Issue Brief - 해외건설 정책 동향</a>                                                                 |
| 2/24(화) | 건설/부동산   | <a href="#">건축물분양법에 따른 시정명령을 취소하는 대법원 확정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a>                                                           |
| 2/25(수) | 노동       | <a href="#">개정 ‘노란봉투법’ 시행령 및 고용노동부 해석지침이 확정되었습니다.</a>                                                              |
| 2/25(수) | 기업지배구조   | <a href="#">3차 개정상법 본회의 통과 - 확정된 자사주 의무소각 제도와 실무 대응 전략</a>                                                         |
| 2/25(수) | 지적재산권    | <a href="#">2025년 주요 판례 및 2026년 주요 개정 법령 정리 - (1) 특허</a>                                                           |
| 2/25(수) | 지적재산권    | <a href="#">2025년 주요 판례 및 2026년 주요 개정 법령 정리 - (2) 상표, 디자인, 부정경쟁방지법</a>                                             |
| 2/25(수) | 형사       | <a href="#">공시 내용대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기적 부정거래로 기소된 사건에서 전부 무죄를 이끌어낸 사례</a>                                       |
| 2/26(목) | ESG      | <a href="#">금융위원회, 지속가능성 공시제도 로드맵 발표</a>                                                                           |
| 2/26(목) | 금융       | <a href="#">월간 기업 · 금융분쟁 뉴스레터</a>                                                                                  |
| 2/26(목) | 지적재산권    | <a href="#">인공지능 기본법과 콘텐츠 산업 - ‘투명성 확보 의무’를 중심으로</a>                                                               |
| 2/26(목) | 소송       | <a href="#">법령상 권한의 위임이 아닌 내부 위임에 해당함을 이유로 수임관청이 자기 이름으로 한 보조금 지급 제한처분 및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한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a> |
| 2/27(금) | 지적재산권    | <a href="#">2025년 주요 판례 및 2026년 주요 개정 법령 정리 - (3) 저작권</a>                                                          |
| 2/27(금) | 지적재산권    | <a href="#">2025년 주요 판례 및 2026년 주요 개정 법령 정리 - (4) 영업비밀</a>                                                         |
| 2/27(금) | 에너지·자원   | <a href="#">재생에너지법(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 국회 통과</a>                                                                          |
| 2/27(금) | 중대재해     | <a href="#">대표이사가 아닌 계열사 총괄회장은 특수한 경우가 아닌 이상,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a>                        |

## 입법전략자문그룹

**법무법인(유) 세종 입법전략자문그룹(Legislative and Government Affairs Group)**은 기존 명망가, 고위관료 출신의 인재와 함께 국회 및 정부부처 출신의 실무 전문인력들이 유기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대관 및 규제대응업무 전문팀입니다. 다양한 네트워크와 풍부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의 요구에 맞춤형 Total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자부합니다.

상기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언제든지 아래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더욱 자세한 내용을 제공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정 분야에 대해 “법률 제·개정 사항과 동향 파악, 정부정책 등에 대한 모니터링이나 Legal 분석” 등이 필요하신 경우에도 연락주시면 최선을 다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문서의 내용(인쇄본 또는 전자문서) 및 이를 이용하여 편집한 내용은 제3자에게 공유하실 수 없으며, 필요하신 경우 법무법인(유) 세종과 미리 상의하여 동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백대용** | 변호사

[프로필보기](#)



**장대섭** | 고문

[프로필보기](#)



**김성범** | 변호사

[프로필보기](#)



**방세희** | 변호사

[프로필보기](#)



**조성환** | 변호사

[프로필보기](#)

**SHIN & KIM**

법무법인(유) 세종

서울시 종로구 종로3길 17 디타워 D2 23층 (우)03155 T. 02-316-4114 <https://www.shinkim.com>